

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(제1조의2제1항제1호 관련)

1. 안전 확보

- 가.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,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프로그램 지도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- 나. 안전사고·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다.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가자(지도 인력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라.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
2. 프로그램 운영

- 가. 프로그램 진행에 적절한 인력, 기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나. 충분한 휴식 및 영양공급, 안전한 취침을 위한 공간·장비 확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다.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·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고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.
- 라.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청소년에게 음주·흡연행위를 금지하여야 하고, 지도 인력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마. 청소년에게 정신적·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바.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 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.
- 사.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·등록·허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신고·등록·허가를 거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- 아. 프로그램 일정, 참가비, 지도자 자격 및 경력, 인증수련활동 여부, 가입 보험 종류 및 약관, 사목에 따른 신고·등록·허가 여부, 안전관리 대책 등의 정보를 주최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.